

제47.7호

행정명령

**뉴욕주 비상 사태 선포 및  
뉴욕주 방위군에 다양한 교정 시설에서 공공 질서를 보장하고 공공 재산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당국을  
지원할 것을 적극적으로 명령**

2025년 2월 17일과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교도관의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파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도관,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(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)의 보살핌을 받는 32,290명 이상의 개인 그리고 이러한 교정 시설 주변 지역사회의 안전에 임박한 위협을 초래했기 **때문에,**

검토 결과 직원을 지원하고, 교도소 및 지역사회 감독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전을 제공하고, 직원 자원을 보존하고, 주 전역의 교정 시설에서 안전한 운영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 존재하기 **때문에,**

**이제, 본인 뉴욕주 주지사 Kathy Hochul**은 뉴욕주 헌법과 행정법 28조 2-B항에 의해 저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교정 시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 전역에 걸친 재난 비상 명령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. 이 행정명령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.

**또한,** 행정법 2-B조 29-a항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2025년 7월 31일까지 다음 법률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수정하는 바입니다.

- 주 재정법(State Finance Law) 97-G조: 재난 위기에 대응 및 복구함에 있어서 음식물, 물자, 서비스, 장비의 구매, 또는 영향을 받은 지방 정부, 개인, 기타 민간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중앙화된 서비스를 공급 또는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
- 주 헌법 제5조 1절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, 그리고 주 계약에 추가 작업, 장소 및 시간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 재정법 112절 및
- 주 재정법 제 163절, 용역, 기술 및 자재를 표준 고지 및 조달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않고 구매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.

2024년 7월 1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 
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 
선포합니다.

주지사

